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735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064호)	김영진의원	2025. 8. 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 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652호)	정부	2025. 9. 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 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  
보고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 4. 부대의견

### 가.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 · 수입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 5. 가상자산의 매각

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

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u></p> <p><u>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u></p> <p><u>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u></p> <p><u>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u></p> <p><u>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u></p> <p><u>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u></p> <p><u>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u></p> <p><u>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u></p> <p><u>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u> <u>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u> <u>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u></li> <li><u>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u> <u>부계획 확인</u></li> <li><u>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u> <u>는 방문 상담</u></li> <li><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u> <u>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u></li> </ol> <p><u>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u></p> <p><u>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u></p> <p><u>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u></p> <p><u>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u></p> <p><u>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u></p>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1. ~ 4. (생략)

### 〈신 설〉

## ② (생략)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  
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 · 절차 ·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5. 가상자산의 매각

##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생략)

<신설>

<신설>

③ -----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